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14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서명옥 · 김기웅 · 박충권
이헌승 · 김정재 · 박대출
성일종 · 박성훈 · 박성민
정연욱 · 김용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을 적용한 의료AI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보건의료 데이터는 이러한 산업 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의료AI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지원과 동시에 조화
로운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가명처리 특례 규정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의료법」 상
의무기록에 기반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의료AI 산업 발전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법」 상 처리되
는 개인정보 중 희귀질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
아 가명정보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되, 다른 정보는 가명정보의 처리

에 관한 특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3항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보 중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정보 등 정보주체의 인권 및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 ----- ----- ----- ----- ----- 다만, 「의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보 중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정보 등 정보주체의 인권 및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